

경력 산정의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1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%를 적용하는 경력
 - 가.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·감리·유지보수·관리·진단·점검·검사에 관한 기술업무
 - 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
 - 다.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
 - 라. 교육 관계 법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, 「기능대학법」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·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
 - 마. 전력기술 관련 단체·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
2. 자격·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%를 적용하는 경력
 - 가.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·제조·검사 등 기술업무
 - 나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·공사·감리·검사·정비 등의 기술업무
 - 다.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
 - 라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
 - 마.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
 - 바. 전기기계기구의 설계·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
 - 사.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전자·통신기술 직렬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통신기술·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·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
 - 아. 전자·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·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
3. 자격·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%를 적용하는 경력: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